

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12. 26.(목) 14:39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 원 장
김석진 부위원장
허 욱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6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9-65-315~320)

- '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'에 대해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「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, (주)한컴모빌리티, (주)기창큐브, 가민코리아(유), (주)피유애플 등 4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 (2019-65-321)

- ‘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’에 대해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서울특별시 교통방송」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원안대로 의결함
- 다만,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함

<변경허가 조건>

-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, 허가사항(교통,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)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

<권고사항>

-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

다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9-65-322)

- 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’에 대해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과기정통부의 (주)딜라이브(주)(20.1.27. 허가 유효기간 만료)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구분	주요 내용	수정(안)
조건 수정*	PP 의견수렴 절차 담보	<PP평가·계약> 4. (주)딜라이브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 기준 및 절차,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,

구분	주요 내용	수정(안)
	<p>지역채널 심의위원회· 시청자위원회 실효성 제고 (위원 임기 제한, 개최빈도 확대)</p>	<p>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이 경우,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지역채널 심의위원회> 2. (주)딜라이브는 ... ‘지역채널 심의위원회’를 운영하여야 하며, (주)딜라이브의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.</u></p> <p>- ‘지역채널 심의위원회’에서는 <u>분기별로</u>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, 문화,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,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고 ...</p> <p><시청자위원회> 10. (주)딜라이브는 ... ‘시청자(이용자)위원회’ 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.</u></p> <p>- ‘시청자(이용자)위원회’는 <u>분기별로</u> 채널개편, UI(User Interface) 구성, 채널 및 상품·요금의 다양성, 가입·해지에 관한 사항, 방송 화질 등 시청자(이용자)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...</p>
	<p>사업계획서 이행 조건과 이행점검 조건 통합</p>	<p>1. (주)딜라이브는 ...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- <u>아울러</u>, (주)딜라이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, ...</p>
<p>권고 사항 부과</p>	<p>이용약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</p>	<p>○ (주)딜라이브는 <u>이용약관 중 위약금,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</u></p>

* 밑줄이 추가 또는 수정한 내용

7] 보고사항

가. 「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정에 관한 사항

- ‘「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정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가이드라인(2020. 1.27. 시행) 주요내용

- ▶ 계약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,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, ▶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,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,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, ▶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의무 등을 명시

나. 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재난발생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재난방송 준칙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※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① 라디오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방송 내용 조정

-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함

② 사전 예방적 재난정보 제공 강화

-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 재난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함

③ 사전 예방적 재난정보 제공 강화

-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하여 수어방송 및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고,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경우 의무를 강화함

다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광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방송법 시행령」 개정(20.3.11 시행)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동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※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*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
- * 평일 : 19:00~23:00, 토·일·공휴일 18:00~23:00 (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)
- * 다만,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는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(평일 : 11:00~15:00, 토·일·공휴일 : 11:00~16:00)
- 「방송법」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
- 종합편성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.05%에서 0.1%로 상향 등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2월 30일(월)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5:49)